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434

발의연월일: 2024. 12. 12.

발 의 자:서영교·김문수·이용우

이춘석 • 한민수 • 차지호

채현일 · 정태호 · 오세희

김교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방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납부를 매개하는 금융회사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두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시행령에서는 수수료율을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대행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는 납부 수수료를 충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임.

한편,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된 2020년도 국세수입은 약 14조 424억원으로 이와 관련된 납부대행 수수료가 약 1,123억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납세대행 수수료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있으며,특히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미부과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 신용공여의 방법"으로 한다.

-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자로부터 국세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부과할 수 없는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조(납부의 방법) ① (생 략) 제12조(납부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 (2) -----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 ----통신과금서비 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 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 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 드등"이라 한다)----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 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 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자 로부터 국세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 설>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 하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 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 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부 과할 수 없는 납부대행 수수료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운영, <u>납부 대행 수수료</u> 및 납 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에 | 상대 | 강히 | 는 | 급 | -액을 | - 충 | 당 | 할 | 수 |
|---|----|-----|-----------|----|-----|-----|---|----|----|
| 있 | 도록 | · 신 | 8 | 카. | 드등 | 으로 | 닙 | -부 | ·된 |
| 세 | 액의 | 일 | 부 | 를 | 일정 | フ] | 간 | 동 | 안 |
| 운 | 용하 | ·게 | 하 | 는 | 신원 | 용공여 | 희 | 등 | 을 |
| 할 | 수 | 있ા | <u>구.</u> | | | | | | |

| <u>(5)</u> | | | | | | | | |
|------------|----|----|----|-----|----|-----|---|---|
| | t | 古부 | 대행 | 수 | 수료 | 라_ | 관 | 련 |
| <u>된</u> | 필. | 요한 | 조치 | , 신 | 용공 | े व | 의 | 방 |
| 법- | | | | | | | | |
| | | | | | | | | |